

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
(참 조)

제 목 **유류비 상승에 따른 운송용역(조달청) 계약금액 조정 기준 안내**

1.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-1902호 (2026.04.27)와 관련입니다.

2. 조달청에서는 국제유가 폭등으로 인한 유류비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계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‘운송용역 계약금액 조정 기준’을 마련하여 각 지방 조달청에 시달하였습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, 전세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알려드리오니,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= 아 래 =

가. 적용대상 : 수요기관으로부터 구매위임을 받아 조달청에서 체결한 계약에 한하여 적용

나. 조정대상 : 계약체결일(또는 직전 조정기준일)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

동시에 품목조정률이 3% 이상 증감된 계약

※ 유류비의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*

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 조정 가능

다. 주요내용 : 연비는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개별 차량별 공인연비(차량등록증 상의 연비)를 적용하되, 계약상대자가 실 주행연비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 주행연비 적용

라. 실 주행연비 적용방법

▷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

- 개별 실 주행연비 < 평균 실 주행연비 → 평균 실 주행연비 적용
- 개별 실 주행연비 ≥ 평균 실 주행연비 → 개별 실 주행연비 적용

※ 평균 실 주행연비: 중형 4.64Km/L, 대형 3.12Km/L

※ 각 적용 우선순위 및 산출방법은 붙임(운송용역 계약 금액 조정 지침) 자료 참조

※붙임 : 1) 조달청 공문 1부.

2) 운송용역 계약금액 조정 지침(수정본) 1부. [끝]

※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서울시 전세버스운송사업
이사장 오성



담 당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상 무 박호동 이사장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 26- 82호 (2026.04.29) 접수 ()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(교통회관 11층) / <http://www.tourbus.or.kr>
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 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